

#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66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6.//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현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“어머니합창단” 명칭이 단원 자격을 “어머니” 로 한정하는 이미지가 있어 합창단 명칭을 “여성합창단” 으로 변경하여 기혼 및 미혼 여성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,
- 합창단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임으로써 합창단의 활발한 대내·외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조례 명칭 및 조문 개정 : 어머니합창단 ⇒ 여성합창단
  - 조례명 :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⇒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
  - 각 조문의 “어머니합창단” ⇒ “여성합창단” (제1조 ~ 제5조, 제8조~제10조)
    - 현 조례 제7조에 규정된 단원 자격은 “일반 단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” 으로 되어 있으나, 합창단 명칭은 어머니합창단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인 어머니만으로 한정되는 모순된 이미지로 보일 수 있으므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혼돈을 방지하고 기혼 및 미혼 여성의 다양한 참여 유도.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(용어와 표현 등이 명확)에 따른 조문정비

개정조례안 : 불 임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 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4. 4. 10. ~ 4. 30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현행 조례
-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

#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” 를 “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어머니합창단(이하 ‘어머니합창단’ 이라 한다)” 을 “여성 합창단” 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적용” 을 “적용범위” 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시” 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로, “어머니합창단” 을 “여성합창단” 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어머니합창단은 안산시어머니합창단” 을 “여성합창단은 안산시여성합창단” 으로, “어머니합창단은 상록구어머니합창단” 을 “여성합창단은 상록구여성합창단” 으로, “어머니합창단은 단원구어머니합창단” 을 “여성합창단은 단원구여성합창단” 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어머니합창단” 을 “여성합창단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어머니합창단” 을 “여성합창단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어머니합창단” 을 “안산시여성합창단” 으로, “상록구어머니합창단” 을 “상록구 여성합창단” 으로, “단원구어머니합창단” 을 “단원구여성합창단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어머니합창단” 을 “여성합창단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머니합창단의 활동계획이 어머니합창단” 을 “여성합창단의 활동계획이 여성합창단” 으로, “어머니합창단” 을 각각 “여성합창단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호 중 “어머니합창단원” 을 “여성합창단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 어머니합창단” 을 “그 밖에 여성합창단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어머니합창단” 을 “여성합창단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머니합창단” 을 “여성합창단” 으로, “범위 안에서” 을 “범위에서” 로,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관 실과	문화예술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문화예술과장 김 흥 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예술계장 이 영 분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영 순 (☎ 2068)

# 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안산시에 <u>어머니합창단(이하 “어머니합창단” 이라 한다)</u>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)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시 및 상록구, 단원구에 설치된 <u>어머니합창단</u>에 한한다.</p> <p>제3조(명칭) 시에 설치하는 <u>어머니합창단</u>은 안산시어머니합창단이라 칭하고, 상록구에 설치하는 <u>어머니합창단</u>은 상록구 <u>어머니합창단</u>, 단원구에 설치하는 <u>어머니합창단</u>은 단원구어머니합창단이라 칭한다.</p> <p>제4조(기능) <u>어머니합창단</u>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제5조(구성) ① <u>어머니합창단</u>은 단장, 지휘자, 반주자 각 1명과 여성단원 60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<u>시어머니합창단</u>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, <u>상록구어머니합창단</u>의 단장은 상록구청장이 되며, <u>단원구어머니합창단</u>의 단장은 단원구청장이 된다.</p> <p>제8조(운영 및 활동) ① <u>어머니합창단</u>의 대내외 활동은 자체 결정에 의하여 행하되, 사전에 단장에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여성합창단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<u>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</u>-----<u>여성합창단</u>-----.</p> <p>제3조(명칭) ----- <u>여성합창단</u>은 안산시여성합창단----- ----- <u>여성합창단</u>은 상록구 <u>여성합창단</u>-----<u>여성합창단</u>은 단원구여성합창단-----.</p> <p>제4조(기능) <u>여성합창단</u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구성) ① <u>여성합창단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안산시여성합창단</u>----- --<u>상록구여성합창단</u>----- -----<u>단원구여성합창단</u>-----.</p> <p>제8조(운영 및 활동) ① <u>여성합창단</u>----- ----- -----.</p>

② 단장은 어머니합창단의 활동계획이 어머니합창단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어머니합창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.

제9조(해촉) (생략)

1. 어머니합창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경우
- 2.~3. (생략)
4. 기타 어머니합창단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0조(보상 및 지원) ① 어머니합창단의 일반 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어머니합창단의 원활한 활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과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----- 여성합창단의 활동계획이 여성합창단-----  
-----  
----- 여성합창단-----  
-----  
--.

제9조(해촉) (현행과 같음)

1. 여성합창단원-----  
-----
- 2.~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여성합창단-----  
-----

제10조(보상 및 지원) ① 여성합창단-----  
-----.

② ----- 여성합창단-----  
----- 범위에서-----  
----- 그 밖의-----  
-----.